

EU, GM 옥수수 수입허가

유럽 집행위원회(EC)는 7월 19일 수입과 가공에 대한 NK603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GM) 옥수수의 시장 유통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몬산토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 결정은 앞으로 1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수입되는 옥수수는 벌크, 자루, 컨테이너 등 어떤 형태로 수입에 상관없이 반드시 GM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NK603 옥수수는 이미 세계 각지에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없다. 이번 집행위원회의 허가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에 허가되는 GM 옥수수의 수입과 가공은 가축 사료와 공업용 원료에만 적용된다. 식품용 NK603 옥수수의 시장 유통 허가 여부 결정은 다음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EU 환경집행위원 Margot Wallström는 말한다. “NK603 옥수수는 엄격한 사전 시장위험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EU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옥수수는 다른 일반 옥수수만큼 안전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옥수수의 안전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용자나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 상품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실한 라벨링 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시장 출하 후 관리 제도를 통해 그 상품의 시장 유통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NK603 옥수수의 평가와 수입 허가는 2001/18/EC EU 지침(Directive 2001/18/EC)¹⁾ 발효 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상품은 지난 4월에 발효된 새로운 엄격한 라벨링 규정과 추적가능성(traceability) 규정²⁾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장유통시 이 상품은 GM 옥수수를 함유하고 있다는 자세한 성분 표시를 해야만 한다. 상품의 출하 후 모니터링은 옥수수에 적용되는 독특한 확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허가는 수입과 동물 사료용에 관한 것으로, 재배와 식품용으로서의 이용은 제한된다.

지난 4년 동안 EU는 GM 식품, 사료, 작물을 통제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하의 허가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소비해도 안전하며 환경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전자변형 유기체(GMOs)만이 유럽 시장에 유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허가는 개별적인 대상에 근거한 GMOs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동물 사료용 NK603옥수수의 사용신청은 허가되었다. 하지만 동물사료 목적의 수입도 NK603 옥수수의 식품용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식품에 관한 EU 규정(Novel Foods Regulation)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허가결정은 현재 농업이사회(Agriculture Council)에서 논의하고 있다. 허가 여부는 다음달쯤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1) Directive 2001/18/EC 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외부 방출 허가에 관한 것이다.

2) Regulation(EC) No 1829/2003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작물에 관한 규정

Regulation(EC) No 1830/2003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추적가능성과 라벨링 및 유전자 변형 유기체에서 생산된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추적가능성에 관한 규정

[관련 자료]

2001년 1월 몬산토사는 2001/18/EC 지침에 의거하여 스페인의 권한 기관에 NK603 GM 옥수수 시장 유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은 NK603 옥수수의 동물 사료용 및 산업적 용도의 수입과 가공에 관한 것이었다. NK603 옥수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간단한 GM을 가한 것으로 항생물질 저항성 유전 표지(marker gene)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스페인의 권한 기관은 NK603 옥수수가 다른 일반적인 옥수수같이 안전하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도 다른 회원국의 권한 기관이 제기한 몇몇 과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신청서를 평가하였는데 이 평가에서도 NK603 옥수수가 다른 일반적인 옥수수만큼 안전하다고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2001/18/EC 지침으로 설립된 규제 위원회(The regulatory Committee)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29일 유럽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3달 이내에 제안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했다.

2004년 6월 28일 환경이사회(Environment Council)는 그 제안을 검토하였다. EU 신규 가입국 장관들까지 참석한 그 회의에서 허가에 적정한 투표수도 반대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유럽이사회가 요구된 시간 제한 내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가 결정 의무를 지게 되었다.

NK603 옥수수의 안정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은 전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 그 중에서도 특히 2001/18/EC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 지침은 또한 인가 후에 상품에 적용할 강제적인 관리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감시 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시장에 일단 출하된 상품의 안전성도 계속 평가하도록 하는 출하 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은 허가가 내려진 기간 모두에 계속 적용된다. 허가권 보유자는 매년 모든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GMOs 포함 상품의 시장 유통 시 이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 상품의 구입과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2001/18/EC 지침과 1830/2003 규정의 라벨링과 추적가능성 조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규정 하에서는 사업 경영자가 각 유통 단계마다 GMOs 가공 식품인지의 여부와 상품의 GMOs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그 정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적가능성(Traceability) 규정은 생산과 유통체인 모두에 걸쳐 GMOs 가공식품 여부와 포함여부를 추적해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그 규정은 시장 유통단계 전반에 걸친 GMOs에 대한 라벨링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상품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은 ‘이 상품은 GMO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상품은 GM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GMOs 함유 측정 방법과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이것을 통해 상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NK603 옥수수 함유 여부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상품의 GMOs 함유여부 표시가 정확한지 판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본추출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EU의 지시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동의로 인해 GMOs 함유상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GMOs 상품허가를 EU 내에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U RAPID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 아카데미)